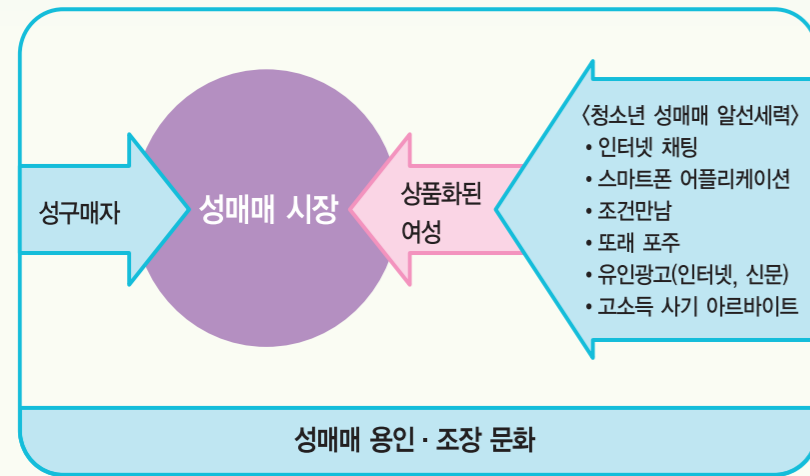


## 성매매가 왜 나쁜가요?

▶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 범죄입니다.



성매매는

또래포주나 업주, 소개업자, 조직폭력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몸을 성적 도구나 성상품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산업 구조 속에서 인신매매·성적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언어폭력, 협박과 공갈 등을 유발하는 “인권침해”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매매 경험과 동시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 어디로 도움을 청하면 되나요?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02-814-3660	경원사회복지회 상담소 with us 031-747-0117
여성인권상담소 소나의 집 02-474-0746	두레방 031-841-2609
이룸 02-953-6279	어깨동무 031-222-0122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02-3394-7936	여성인권센터 쉬고 031-957-6117
인권희망 강강술래 희희낙낙상담소 032-501-8297	춘천 길잡이의 집 033-243-8297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043-257-8297	새날 054-231-8297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041-575-1366	대구여성회관 상담소 민들레 힘내 053-430-6020 053-422-8297
느티나무 042-256-8297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052-249-8297
전북현장상담센터 063-282-8297	부전현장상담센터 꿈아리 살림 051-816-1366 051-257-8297
언니네 062-431-8297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
제주 064-702-8297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061-662-8297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055-246-8297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061-276-8297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님 064-702-8297	여성인권상담소 055-273-2241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성매매피해 신고 및 상담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www.1388.or.kr)
- 사이버포래상담실 : 카카오톡 cybersatto, 네이트온 cybersatto@nate.com  
전화 02)6052-1318 / 02)6348-1318 / 010-3232-1318

▶ 청소년성매매특별전담실 ONE-NET

- 전화상담 02)3280-5008 / 010-5933-5008
- 사이버상담 : 카카오톡 dasihamkke, 네이트온 dasihamkke@nate.com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노두가 함께  
만들아가는  
행복도시 서대문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이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SEODAEMUN-GU

## 성매매, 얼마나 알고 있나요?

- ▶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강요 및 알선 등을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 공개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등
- ▶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취업제한이 되는 시설 :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성매매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 ▶ 성매매하면 처벌 받아요!

성매매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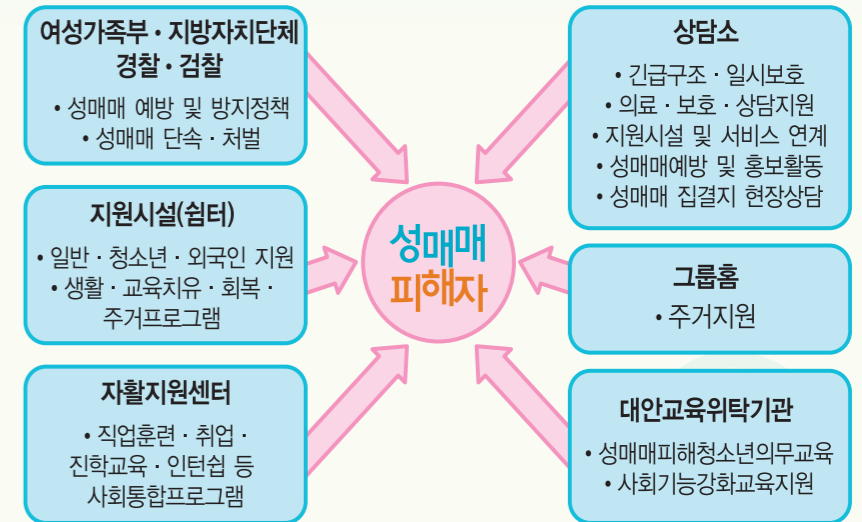
### ▶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구매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자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5년 이상의 징역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

##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방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신고 포상금 제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행위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액

신고 대상 범죄	포상금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100만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장소제공 및 알선행위, 이와 관련한 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행위,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등	70만원

신고기관 : 관할경찰서(국번없이 112)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